

외국인 수형자 처우의 과제

박 광 섭*

국 | 문 | 요 | 약

최근 외국인의 입국 수 및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도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로 인하여 적절한 처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형자의 법적 지위향상이나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나 정책적 관심은 내국인 수형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외국인의 가치관, 생활풍습, 언어, 문화, 종교, 관행, 의식 등의 차이는 그들에 대한 합리적 처우의 장애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수형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형자 전담교도소는 대전과 천안의 교도소 2곳뿐이다. 여성의 경우 형주 여자 교도소에 수용한다. 따라서 열악한 시설환경, 과밀수용, 종교집회 제약 등 다양한 처우상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안도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 전담 교도소 신축과 그 운영의 민간위탁, 언어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수형자 전담 인력 양성,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유로운 종교의식의 기회제공, 자신들의 문화와 접촉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매체제공, 법무부에 외국인 수형자 전담 부서 신설 운영, 외국인 수형자 처우에 관한 각종 규정 정비, 국가 간의 수형자 이송제도의 확대, 출소 후를 대비한 주거, 건강, 취업, 법무 지원제도의 운영 등이다.

◆ 주제어 : 외국인 수형자, 외국인 수형자 처우, 외국인 수형자 처우의 과제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2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76호, 2008·겨울호)

I. 서 론

그 동안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수형자에게도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가 사회의 핵심적 아젠다로 부각되는 사회 시대적 환경과 맞물려 시설 수용자들의 권리영역의 확대는 물론 권리구제요구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이 모색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형자의 법적 지위 향상이나 권리 보호 문제는 내국인 수용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법적·제도적 수형자 권리 보호 정책 역시 내국인 수용자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 점에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가치관이나 생활 풍습이 다른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일선 시설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¹⁾ 실제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실환경, 급식, 출신국가나 지역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 수형자들을 획일적인 수용 지침에 따라 수용하고 있어 언어소통이나 문화·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상호간의 갈등·마찰·불신·불이해 등이 처우의 합리화에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²⁾

우리나라의 경우 88올림픽 이후 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에 의해 범해지는 범죄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만 하더라도 2006년 보다 2.9% 증가한 약 6,425,257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의 입국이 급격하게 증가함은 국내의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는 물론 해외의 범죄자들이 국내로 이입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외국인 범죄대책은 해결하여야 할 형사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³⁾ 특히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해서는 1980년

1) 太田達也, “來日外国人犯罪者に対する刑事政策的対応の基本的観座”, 罪と罰, 第42巻3号, 日本刑事政策研究会2005, 6, 5面.

2) 竹中樹, 外国人被收容者の処遇上の問題等について, 犯罪と非行 第141号, 日立みらい財団, 2004, 50面以下.

3) 외국인 출입국 규모, 등록현황, 불법체류실태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창환,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40호, 2008, pp.108-109 참조.

대 이전에는 주요 교정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외시되어 왔고 형사사법학계에서조차 문제의 중요성이 별로 거론된 적이 없었음을 볼 때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대한 적극적 대책모색은 매우 중요한 수밖에 없다. 시설에 수용된 외국인 수용자도 2007년에는 마-기결 포함하여 37개국 1,067명으로 2005년과 비교하면 약 1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인 수형자 처우 대책으로 대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외국인 전용교도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1995년 2월 대전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운영하게 된 배경은 첫째, 외국인 수용자의 격증추세에 대응하고, 둘째, 처우기법의 전문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셋째, 지역별로 시설을 운영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경제에 반하므로,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급여 등 처우상 특례 규정이 분산될 경우 집행상 혼란이 가중되며, 다섯째, 대전이 서울과 전국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이라는 점에서 찾은 것이다.⁵⁾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형자 처우의 현 단계로서는 외국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전문적 처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수용 교도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일반 교도소의 일부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 외국인의 문화나 언어 등을 고려한 특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닌 까닭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관계의 빈번한 교류와 함께 외국인 국내 체류에 따른 범죄증가를 예상할 때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함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I. 외국인 범죄의 동향 및 외국인 수용자 처우 현황

1. 일반적 동향

4) 황명호, "외국인수용자의 한국 교정기관 처우에 관한 연구 - 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p.26. <표3-1> 참조.

5) 황명호, 위의 논문, p.134.

외국인의 출입국 규모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격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를 처리한 통계에 의하면 2002년에는 5,317명이었으나 2003년 6,217명, 2004년 7,413명, 2005년 8,313명 그리고 2006년에는 11,42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내외국인간의 절대범죄건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국인은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든다고 볼 때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⁶⁾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직업선택의 가능성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국내 근로자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변화는 3D업종의 인력부족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외국인의 불법체류 현상도 증가함으로써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2005년에 비하여 37.4%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 중 70.5%에 해당하는 8,055명의 형법범, 29.5%인 3,366명이 특별법범이다. 특히 재산범죄의 증가율보다 폭행범과 상해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법범은 -21.9%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⁷⁾

2.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

<표 1>⁸⁾

연 도	계(남, 여)	소 계		중 국		미 국		일 본		기 타	
		기결	미결	기결	미결	기결	미결	기결	미결	기결	미결
2002	508(472,36)	285	223	122	97	17	12	6	5	140	109
2003	657(559,98)	308	349	149	182	14	10	3	6	142	151
2004	621(548,73)	313	308	139	154	4	6	24	15	146	133
2005	698(620,78)	392	306	171	209	6	0	14	11	201	86
2006	621(579,42)	348	273	177	131	8	1	13	10	150	131

6) 범죄백서(2007년판), 법무연수원, p.142 이하 참조.

7) 이창한, 앞의 글, pp.108~117 참조.

8) 범죄백서(2007년판), pp.321~32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현재 외국인 수용자는 621명으로 기결 348명, 미결 273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남자는 579명, 여자는 42명이다.

<표 2>⁹⁾

행기 년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
2002	287	7	49	107	59	40	5	20
2003	308	34	64	71	66	47	6	20
2004	313	21	63	62	81	57	6	23
2005	392	75	61	72	76	74	6	28
2006	348	21	64	71	75	85	3	29

<표 2>에서 형이 확정된 348명의 행기를 보면 1년 미만 21명, 1년 이상 64명, 3년 이상 71명, 5년 이상 75명, 10년 이상 85명, 20년 이상 3명, 무기가 29명이다. 이 중 135명은 살인, 78명이 강도, 폭행·상해가 24명으로 강력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절도 24명, 사기·횡령 8명, 강간 18명, 마약류 23명, 기타가 38명으로 분포되어 있다.¹⁰⁾

한편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하여 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도 2002년 6명에 비하여 2007년도에는 10배가 증가한 66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성범죄와 폭력범죄의 비중이 높으며, 2008년 현재에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자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¹¹⁾

9) 범죄백서(2007년판), p.323.

10) 범죄백서(2007년판), p.324.

11)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통계자료 참조: http://www.moj.go.kr/HP/attach/pro_ebook/2007/VIEW.HTM

III. 외국인 수형자 처우상의 문제점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UN의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 준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¹²⁾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문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의 입소 수용절차부터 시작하여 급양, 거실환경, 생활필수용품, 물품구매, 편의시설, 교육·교화과정 및 내용, 교도작업, 직업훈련, 보건·의료, 분류심사 및 포상, 고충처리제도, 청원·진정·접견·통신·서신 등 기본적인 수형생활요소 외에 의사소통과 자국 영사와의 개별상담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¹³⁾ 다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내국인 수용자와 차별 없는 처우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수용자가 누리는 법적 처우를 비롯한 모든 처우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국제법상 관례나 협약, 그리고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국가 간의 특약을 준수해야 할 특수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¹⁴⁾ 하지만 대부분의 처우상 문제는 내국인과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인 까닭에 여기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인간적 처우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2) 동 준칙 제6조 제1항은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8조는 ‘수용자의 수용은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하며, 채무로 인한 수용자 및 민사피구금자는 분리하여 구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급식에 있어서는 모든 수용자는 필요한 때 언제나 용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제21조는 ‘실의작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소한 1일 1시간의 실의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및 위생처우에 있어서는 ‘모든 시설에는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최소한 1인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제22조), ‘여자수용시설에는 산전, 산후 관리 및 진료를 위한 특별시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운의,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형법」, 역사비평사, 1993, p.113.

13) 太田達也, 前掲論文, 8面.

14) 박희호,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4, p.69.

1. 시설환경 측면

(1) 현재 외국인 전용교도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 외국인 수형자 거실은 156개(1개 거실면적 3.15㎡)로 최대 약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 사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 수형자를 2명씩 독거수용원칙에 따라 수용한다고 예정할 때의 시설규모이다.¹⁵⁾

그러나 이 규모의 시설로는 현재도 110명이 초과한 상태로써 외국인 범죄의 급증 추이를 볼 때 수용불능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머지않아 외국인을 내국인 사동에 혼거 수용할 수 밖에 없어 내국인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정행정 이미지의 손상은 물론 교도소 자체의 치우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국제 수용자 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¹⁶⁾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외국인 범죄자의 시설내 수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수는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과 협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이 협약에 따른 수용자 이송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범죄 피해자 및 이송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수용자 이송이 가능하다는 제약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한 수용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5)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 제6조는 「외국인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거실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혼거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습관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상호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는 실질적인 자국민보호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그의 가족, 친지 및 친구들이 살고 있어 그와 진정한 삶의 연계를 가진 본국이나 거주국으로 이송하여 수형자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감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국제 수형자 이송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33호,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8호)'을 제정·공포하여 수형자이송의 시스템 가동을 위한 국내적 준비를 마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천진호, "국가간 수형자 이송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을 참조.

(2) 열악한 외국인 수용자 수용 공간 및 시설규모는 외국인 수형자간의 국적별·민족별 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수용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다수를 점하는 민족이나 국가의 수용자들 간 교도시설내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알투나 마찰이 계속되게 되어 집단세력화 획책에 의한 집단 난동이나 민족간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¹⁷⁾ 수용시설의 부족으로부터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3)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대전교도소는 내국인의 경우 2명 이상 문제 수용자 전담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용자는 대부분 초범이어서 확일화된 내국인 중심의 처우 내용이나 방법이 외국인 수용자에게 적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교정 시설 내에서 각각의 처우지침이나 내용, 방법 등을 달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시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마련이다. 특히 구분수용이라는 수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4) 시설환경의 열악성은 거실환경에서도 비인간적 처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모든 시설이 내국인 중심으로 계획 건설된 것이어서 외국인의 신체나 잠자리 문화 등을 고려할 수 없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양계 외국인 수형자는 체구가 크고 침대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의 좁은 거실공간과 바닥 문화에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편한 침대 등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SOFA협정에 의한 미군 범죄자 수용환경에 비추어 보면 일반 외국인 수용자들 역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¹⁸⁾

17) 황명호, 앞의 글, p.114. 대전교도소의 경우 2007년 1월 10일 현재 3.3평방미터에 1.7명을 수용하고 있어 미국의 0.75명, 일본의 1.2명보다 과밀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대전교도소 교정행정자문회의 자료, 2008. 9.).

18) 小柳武, 外国人受刑者に対する矯正処遇, 法律のひろは 第48巻1号, きょうせい, 1995, 42面.

(5) 기타 부족한 시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과일수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악성감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과일수용은 생활습관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해 국가별 개별처우가 어렵게 되고, 성향, 의식, 가치관의 차이는 수용자간 집단갈등이나 싸움을 야기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 점이 동서양계, 민족별 분리수용 필요성 제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교정행정의 목표나 형벌의 본질을 외면하고 단순 격리 기능에 자족한다는 비판까지 가능하여 선진 교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6) 종교시설도 문제이다. 종교적 의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향후 자신의 미래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은 재론이 필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연구¹⁹⁾에 의하면 불교와 기독교를 신앙하는 동양계 수용자들의 신앙생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조사 보고되었지만, 소수 종교를 예배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일부 수용자들은 종교 활동의 시간안배 등 소수종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적다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종파의 성상, 성물, 성화 등의 개인 소지나 무슬림의 라마단기간 준수 요구 등이다. 특히 취업장 근로시간동안 근무자가 수용자의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물론 우리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3조 1항에 「수용자는 그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소수 종교 신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불교·개신교·천주교와 같은 종교는 적극적인 교정 시설외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소수종교를 가진 수용자는 상대적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어 개인별 신앙과 의식을 향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큰 것이다.

19) 황명호, 앞의 글, pp.119~120.

20) 濱克彦, 来日外国人犯罪と刑事政策, 罪と罰 第42巻 3号, 日本刑事政策研究会, 2005, 26~27面.

2. 수용자 관리 측면

외국인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절대 부족은 외국인 수형자 처우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교도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과의 인적교류관계는 당해 외국인의 문화나 언어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을 지정만 해놓고 최소한의 언어소통이나 문화의 이해가 가능한 교정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교도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6년간 1명의 직원이 외국인 수용자의 관리를 맡고 있다.²¹⁾ 지정 전담 교도소의 사정이 이렇다면 미결수용자를 직접 수용하는 각급 교도소의 사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 수용자는 미국, 일본, 중국, 몽골 등 24개국에 걸쳐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각 국가별 외국어 능통자 채용을 통한 관리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통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 배치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²⁾

3. 문화적 측면

(1)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타고난 개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민족끼리의 공통적 특성은 민족적 문화에 따라 집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한 이해와 교육도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적별·민족별로 그들만의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공통의 처우형태나 기법을 개발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 상황을 예정할 수

21)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일례로 府中刑務所는 외국인 수형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제 대책실을 마련하여 14명의 전담직원을 운용하고 있다; 田中秀樹, 府中刑務所における外国人受刑者の現状及び課題, 罪と罰 第42巻 3号, 日本刑事政策研究会, 2005, 31~32面.

22) 부산교도소의 경우 경비교도대원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진영,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인 수용관리방안 - 부산구치소의 현 실태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교정, 2000. 8, p.78.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의 시설에 집단 수용하고 처우의 원칙과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수형자의 경우 개별적 진단과 처방에 의한 치료는 원칙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처우를 해야 할 명분이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 범죄자라는 점에서는 내국인과 다를 바 없다. 자칫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민족 문화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처우과정에서는 물론 교정의 목적 달성이나 효과달성에도 지장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확실히 처우는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물이해로 비춰지게 되어 행형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음식문화의 경우도 문제이다. 현재에도 외국인 수형자와 내국인 수형자간의 급양단가가 차이가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100원 차이). 물론 외국인 등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하였던 만큼 음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공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입맛은 그 나라나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전통에 의하여 길들여지기 마련이므로 외국인 수형자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전혀 도외시킬 수 없다.²³⁾ 실제 교정시설 내에서 외국인 수형자들은 동·서양 불문하고 한식보다 양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²⁴⁾

(3) 외국인 수용자들의 생활에 대한 편향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각 수형자들의 종교를 존중하여 그들이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공간적 제약이 덜할 수 있겠지만 이슬람이나 힌두 문화권의 수형자들에게는 다른 종교와 달리 반복되는 특정시간과 예배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⁵⁾ 그러

23) 濱克彦, 前掲論文, 27面.

24) 2007년 10월 1일 기준 대전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급식메뉴, 찜, 찜갈도 등에서 동양계 수용자의 경우 불만족스럽다가 20.8%,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4.6%에 달하고 있다; 황명호, 앞의 글, p.55.

나 아직 집회 등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취역장에도 내국인과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충돌가능성이나 마찰기회는 상존하고 있다. 정역으로서의 교도작업은 물론 외부 작업장 출역 시에 작업시간, 작업에 입하는 태도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내국인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5) 시설 외의 정보취득과정에 따르는 제약도 문제일 수 있다. 수용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시청가능여부와 함께 다른 매체에 의한 정보원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외부와의 교통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점도 문제이다. 원래 수용자의 접견이나 서신왕래의 자유는 인간 존재의 생물학적·정신적 발달을 위한 기본적 전제이며 이의 보장은 교정시설 내의 긴장완화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이 점에서 계호중심 통제에서 외부와의 접촉기회 확대²⁷⁾로의 방향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다.

4. 인권보호 측면

체구가 큰 서양 외국인 수용자들의 혼거수용은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해소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범죄자라 하더라도 최소의 주거권이나 수면권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독거원칙을 벗어난 혼거수용은 인권보장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좌변기 설치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배변 시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²⁸⁾

25) 中島富美子, 外国人受刑者処遇の実際と諸問題, 犯罪と非行 第128号, 日立みらい財団, 2001, 85面.

26) 2005년 4월 29일 약 10분간에 걸쳐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 화상 접견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해 9월 이 제도가 정식 운영되게 되었다; 박희호, 앞의 글, p.78.

27) 황명호, 앞의 글, p.23.

이 밖에도 자신의 수용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가 전달과정이나 결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역시 인권침해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빈발한 경우에는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IV. 외국인 수형자 처우의 과제

1. 외국인 전담 교도소의 신축, 운영의 민영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정 수용시설은 내국인에 맞는 시설이다. 따라서 시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²⁸⁾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신체적 특징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때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마찰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규모나 시설내용에 따른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전담 교도소의 신축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의 특성상 자국 영사관이나 대사관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Visa문제해결, 접견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 공관과의 거리가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³⁰⁾

한편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및 각국의 문화에 익숙한 관리자의 채용 등을 고려할 때 민간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³¹⁾

28) 천안교도소의 경우 SOFA협정에 의거 미군 범죄자들에게는 침대 및 양변기를 제공하고 있다;

남상철, "노인 및 외국인 재소자 처우의 적정화 방안", 교정연구 제9호, 1999, p.328.

29) 전담교도소에는 국가별, 민족별, 동·서양계 구분수용 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명호, 앞의 글, p.115.

30) 박희호, 앞의 글, pp.73~74 참조.

31) 미국은 외국인 범죄자의 수용관련 업무를 내국인과 구별하여 이민국(Immigration and National Service)에서 관리하지만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남상철, 앞의 글, p.326.

2. 외국인 전담 직원 양성 및 적정 배치

2008년 9월 23일 대전교도소 외국인전담교도관과의 심층면담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의 경우 외국인 전담 지정교도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영어 외에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수형자 처우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형자 각자에 대한 개별처우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는 행형 현실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다수 범죄자가 속한 언어 예컨대,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 언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적정수의 직원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정직원 속에 외국어 전공자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³²⁾ 또한 교화직 공무원의 외국인 상담업무능력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 봉사하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³³⁾ 현실적으로 교도관들 중 대부분이 외국인 전담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³⁴⁾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 전담직원 등을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적극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편견은 자칫 다시 복수형·보복형 범죄를 저지르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³⁵⁾

3.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한국 문화·언어·교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외국인 수형자라 하더라도 처우주체는 한국인이다. 따라서 한국 교도소에 수용되

32) 田中秀樹, 前掲論文, 36面 参照.

33) 황명호, 앞의 글, p.121.

34) 2008.9.23. 대전교도소 외국인전담교도관 면담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 외국어 구사능력 직원은 영어권 이외에 전무한 실정이며, 외국어 구사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외국인 수용자를 상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도소 3/4분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기간 중 외국인전담교도관 심층면담, 2008.9.23.

35) 김인숙, "외국인 범죄자 처우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 -", 사회과학연구(국민대) 제13집, 2000, p.213 참조.

어 있는 한 한국 문화와의 완전 단절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한국 문화나 언어습득이 수형생활의 편의도모는 물론 처우효과에도 상당히 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특별처우 형태로 일정기간 또는 일과 중 매일 일정시간을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인의 의식구조, 표현방법, 행동이나 표정변화가 갖는 내재적 의미 등을 포함하여 생활 속의 언어습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내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³⁶⁾ 외국인 수형자용의 계몽을 위한 드라마 제작 방영 등으로 언어 익히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방안도 그 하나이다.³⁷⁾ 또한 성범죄나 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나 관찰보다 적극적인 교정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³⁸⁾ 이를 위해 성범죄 수감명령제도 등 전문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4. 종교의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은 물론 종교적 집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소수 종교 신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³⁹⁾ 수형생활 과정에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교를 매개로 하는 것이다. 무종교자들에 대한 종교선택의 권유 역시 당연하겠지만, 각 민족별로 신봉하는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보장은 곧 행형효과의 극대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집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6) 中島富美子, 前掲論文, 84面 参照.

37) 花岡栄次, 外国人被收容者の処遇, 刑政 第103卷 2号, 矯正協会, 1993, 36面 以下.

38) 이창한, 앞의 글, p.122.

39) 小柳武, 前掲論文, 42面. 한편 2008.9.23. 대전교도소 외국인전담교도관 면담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외국인전용 종교집회 시설이 없는 관계로 소수종교의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교시설 등의 미비로 국가간 외교문제의 발생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전교도소 3/4분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기간 중 외국인전담교도관 심층면담, 2008.9.23.

5. 자국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

외국인 수형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간접적이나마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 국가별로 수형자들의 향수를 자극하여 행형 연결효과가 큰 간접 문화의 체험기회를 부여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자국 예술이나 문화 체험장을 운영한다거나, 각 나라의 TV 제작물을 일정시간 방영해 주는 조치 등이다.⁴⁰⁾

6. 법무부 외국인 수형자·보호관찰 전담 부서 신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수형자를 전담하는 총괄기구가 없다. 또한 가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보호관찰전담기구도 없다. 계속 급증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동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처럼 외국인 교정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 단지 1명의 교도관이 시설수용자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미루어 보아도 외국인 수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수용자의 처우 못지않게 가석방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2002년 6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가 2003년 17명, 2007년에는 66명으로 5년간 10배 증가하였음을 볼 때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교정정책적 관심이 매우 미흡하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상 최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자를 관리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⁴¹⁾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보호와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 재범방지효과가 좌우될 정도의 외국인의 소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범죄자 사회 내 처우 전담 기구의 신설 역시 고려하

40) 대전교도소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동 TV 시청시간(저녁시간)에 외국방송 녹화본 방영 등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교도소 3/4분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기간 중 외국인전담교도관 심층면담, 2008.9.23.

41) 이창한, 앞의 글, p.114.

여야 할 것이다.⁴²⁾

7. 외국인 수용 처우 규정의 재정비

현재 외국인 수용 처우에 관한 법 제도적 규정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이다. 미결수용 교도소나 기결 전담 교도소는 이 처우 지침을 기초로 외국인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수용에 있어서는 수용분류, 거실환경, 급식, 의류, 보건, 종교, 외부교통, 외부 정보 취득과정 등 내국인 수형자와 다르게 접근하여야 할 특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우를 실시하여야만 교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⁴³⁾ 따라서 출신 국가별 문화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관점을 유엔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을 위시하여 각 종 국제적인 처우기준과 접목시켜 외국인 수용자 처우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8. 수형자 이송제도의 확대

수형자 이송제도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외국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국민을 자국으로 이송하여 잔형을 마치게 함으로써 자국에의 사회복귀를 통한 재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이다.⁴⁴⁾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외국교도소에서의 복역생활은 언어·문화·음식 등의 차이, 가족이나 친지와 인적 단절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사회와의

42) 일본의 경우 법무성 교정국에 국제기획관을 두어 외국인 수용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太田達也, 前掲論文, 13面 以下 參照. 한편 이는 지난 2008년 9월 23일 대전교도소 3/4분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기간 중 일선 담당교도관들과의 심층적 면담과정에서도 교정본부에 전담 지원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교도소 3/4분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심층면담, 2008.9.23.

43) 太田達也, 前掲論文, 8~9面 參照.

44) 수형자 이송제도의 개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천진호, 앞의 책, pp.105~108 참조.

격리라는 교통 외에도 오히려 형벌보다 더한 부가적 고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의 자국민 아닌 외국인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자신의 문제 외에도 범집행과정에서 자칫 외교적 마찰이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이러한 제외 수형자들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요청과 함께 외교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⁴⁵⁾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31일 국제 수형자 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 이송을 위한 상대국과의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의 준비를 거쳐,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 ETS No.112)」 가입서를 제출하여 2005년 11월 1일부터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 61개 국가와 수형자의 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복역 중인 외국인 수형자 본인이 본국으로의 이송을 희망하고,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수형자 이송에 상호 합의한다면, 이 수형자는 우리나라의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잔여 형기를 복역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석방이나 사면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가능하다.⁴⁶⁾

따라서 수형자 이송을 위한 외국과의 협약의 확대는 외국인 범죄자 수용처우상의 각종 문제점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형의 경제적 측면⁴⁷⁾에서도 유용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처우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국제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 협력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범죄자의 처우에 있어서도 그의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생활근거지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범죄자는 범죄지 국가가 아닌 국적국이나 생활근거가 있는 국가에서 형벌을 집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⁴⁸⁾ 국가의 형벌권

45) 西本仁久, 國際受刑者移送制度導入の意義と諸問題, 犯罪と非行 第128号, 日立みらい財団, 2001, 123面.

46) 천진호, 앞의 책, p.107.

47) 유럽평의회 국가들은 1980년대 형형비용절약을 위해 수형자이송제도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西本仁久, 前掲論文, 117面.

독점 즉, 형법의 국가성의 원칙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점에서 수형자 이송제도는 외국인 범죄자 처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⁴⁹⁾

그러나 우리나라 범죄표상 외국인 범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은 우리와 수형자 이송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협약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⁵⁰⁾

9.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범죄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 국내에 체류한 경우를 대비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 후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사회복귀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취업문제인 까닭이다.⁵¹⁾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들에게도 출소 후 우리 사회에의 적응능력을 키우고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취업 준비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람의 고용상태 계속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⁵²⁾ 추방 후의 사정까지 우리 교정 당국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나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방된 외국인들이 밀입국 등을

48) Michal Palchta, "Transfer of Proceedings and Transfer of Prisoners : New Instruments of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Among the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3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8, p.314; 천진호, 앞의 책, p.112 참조.

49) 添克彦, 前掲論文, 28面.

50) 우리 교정직원들과 외국인 제소자와의 문화적 갈등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수용자 등에 대한 가족·친지의 도움을 받을 기회의 부족 등으로 교정효과는 물론 교정직원들의 소모적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경제적·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이송협약을 적극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남상철, 앞의 글, p.327.

51) 고용국의 태도, 법적장벽, 교육, 재정적 장애, 안정적 주거부족, 진과자라는 낙인들은 취업의 장벽이 된다; 최영신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p.258.

52) 미국의 경우, 세이퍼재단(Safer Foundation)과 같은 비영리 법인이 법무부의 기금지원을 받아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최영신의, 위의 책, p.258. 1977년 오레곤주에 설립된 베타피플 법인은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최영신의, 위의 책, p.269 참조.

통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자국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준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운영은 외국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단오리엔테이션 지원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 거친 후 취업준비과정, 단기 취업과정, 후원 서비스 과정 등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한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출소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들을 고용해 주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액이나 지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모색도 있어야 할 것이다.⁵³⁾ 또한 외국인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국가단체를 만들어 무료상담, 변호사의 도움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⁵⁴⁾ 이 밖에도 지역사회 내의 자국민과 자매결연을 앞선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후원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수형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⁵⁵⁾

V. 결 론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원천적인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다. 언어 소통이나 문화, 의식,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개별적 처우접근에서 공통적인 집합부분을 도출해 내는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5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영신의, 앞의 책, pp.260-273 참조.

54) 일본은 세계전락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외국인 범죄 110번 Hot Line을 설치하여 외국인 범죄 관련 무료상담, 변호사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방법교실 운영, 외국인 고용 기업 등의 각종 보호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김인숙, 앞의 글, p.215.

55) 대련교도소의 경우에는 통신회사의 후원으로 년2회 무료로 효도전화를 걸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박희호, 앞의 글, p.55.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 취하고 있는 외국인 수용처우는 열악한 환경적, 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 만큼 교정당국자들의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시설 내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국인 수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앞에서 검토된 바대로 주거환경, 급식, 의사소통, 종교생활, 이국가-이민족 간의 혼거 수용, 취역 등 다양한 관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적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사업인 언어별 외국인 전담 교도관의 양성을 비롯한 전용 교도소 신축 등을 시도하고, 이에 병행하여 비예산 사업내용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 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지만 주요국의 외국인 수형자 처우형태나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인숙, “외국인 범죄와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13집, 국민대학교, 2000
- 나진영,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인 수용관리방안-부산지치소의 현 실태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교정, 2000
- 박찬운 외,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정」, 역사비평사, 1993
- 박희호,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7
- 이창한,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40호, 2008
- 최영신 외,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황명호, “외국인수용자의 한국 교정기관 처우에 관한 연구 - 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濱克彦, 來日外国人犯罪と刑事政策, 罪と罰 第42卷 3号, 日本刑事政策研究会, 2005
- 西本仁久, 国際受刑者移送制度導入の意義と諸問題, 犯罪と非行 第128号, 日立みらい財団, 2001
- 小柳武, 外国人受刑者に対する矯正処遇, 法律のひろは 第48卷1号, ぎょうせい, 1995
- 田中秀樹, 府中刑務所における外国人受刑者の現状及び課題, 罪と罰 第42卷 3号, 日本刑事政策研究会, 2005
- 竹中樹, 外国人被收容者の処遇上の問題等について, 犯罪と非行 第141号, 日立みらい財団, 2004
- 中島富美子, 外国人受刑者処遇の実際と諸問題, 犯罪と非行 第128号, 日立みらい財団, 2001
- 太田達也, “來日外国人犯罪者に対する刑事政策的対応の基本的視座”, 罪と罰, 第42卷3号, 日本刑事政策研究会, 2005
- 花岡栄次, 外国人被收容者の処遇, 刑政 第103卷 2号, 矯正協会, 1993
- Michal Palchta, "Transfer of Proceedings and Transfer of Prisoners : New Instruments

of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Among the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3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8

The Task of the Foreign Prisoner's Treatment

Park, Kwang-Sub*

Recently, foreigner's crime is increasing sharply due to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 and illegal immigrant. Hence, issues on right treatment in prison are rising as foreign prisoner increases. This is because, up to now,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nterests on elevation of legal position and protection of right of prisoner has been focused mainly on domestic prisoner.

There a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treating foreign prisoner. Specifically, there are many obstacles to rational treatment of foreigners such as foreigners' values, customs, language, culture, religion. These differences would inevitably cause conflict and mistrust between foreign prisoners.

At present, there are only two exclusive prisons for foreigners in Korea - Daejeon and Cheonan. Women foreigners are kept in Cheongju Women Correction. Therefore, there are many issues such as poor facilities, high density, and restriction on religion activities. As a result, searching for solution on rational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absolutely necessary.

The discussion of the solution should cover following points - new construction of exclusive prisons for foreigners, operation by private sector, securing human resources with language skills exclusive for foreign prisoners,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 on Korean culture and language, providing free religious rituals and foreign mass media, set up of department exclusive for foreign prisoners in the Ministry of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26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76호, 2008. 겨울호)

Justice, improvement of policies on treatment of foreign convicted prisoners, expansion of inter-country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nd support system for post-release health, residence, habit, employment.

◆ Keywords : Foreign Prisoner,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 Task of Foreign Prisoner's Treatment